

웅지세무대학교	학생상벌에관한규정	문서번호	5-2-08(E)-0
		제정일자	05.01.01
		최근개정	15.02.13
		주관부서	학생처
		홈페이지공개	공 개

웅지세무대학교 학생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웅지세무대학교(이하 “본 대학교”이라 한다)의 학생을 포상하거나 징계하고자 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대학 학생에 대한 포상 및 징계 절차와 시행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2장 포상

제3조(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성적우수상, 공로상, 문화상, 체육상, 모범상 등으로 구분하며 여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4.03.01.>

제4조(포상의 종류 및 대상) 학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포상을 받을 수 있다.

1. 성적우수상 : 당해 신입생으로 입학성적이 우수한 자 및 졸업성적이 우수 한자
<개정 2014.03.01.>
2. 문화상 : 학술, 문화부문에서 우수하고 창의적 업적을 나타내어 학교의 명예를 높인 자
3. 체육상 : 체육부문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내거나 체육활동을 통하여 학교의 명예를 높인 자
4. 모범상 : 교내외에서 타 학생에게 모범이 될 만한 선행을 하여 학교의 명예를 높인 자
5. 공로상 : 사상이 건전하고 지도능력이 탁월하며 학교발전과 학생자치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6. 기타 지도교수의 포상 추천을 받은 자 <신설 2007.01.01>

제5조(포상의 발의) 제4조의 포상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교학처장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학생위원회에 포상을 발의할 수 있다. <개정 2010.01.01., 2015.02.13.>

1. ~~삭제~~ <2014.03.01.>
2. 지도교수 또는 교직원의 추천서 1부. [상벌규정 서식 제2호] <개정 2010.01.01>
3. ~~삭제~~ <2010.01.01>

제6조(포상 절차) ① ~~삭제~~ <2010.01.01.>

② 교학처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 포상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02.13>

제7조(기록) ① 교학처에서는 포상 학생의 포상사항을 학적부 여백에 기재하여 추천서, 기타 증명서 발급시에 이를 명기할 수 있다. <개정 2015.02.13>

② 교학처 학생팀에서는 수상자 명부에 포상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보존한다. <개정 2015.02.13>

제8조(포상자의 공고) 포상학생에 대하여는 포상사항을 공고한다.

제3장 징계

제9조(징계의 대상) 학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된 때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1. 본 대학의 설립정신에 위배되거나 학교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학생
2. 교직원의 학생지도에 불손한 태도나 반항을 하여 다른 학생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학생
3. 대학의 안정과 질서를 파괴하여 학생 신분에 벗어난 행위를 한 학생
4. 총장의 경고, 금지사항을 위반한 학생
5. 집단 또는 개인적인 행위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학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학생 <신설 2007.01.01>
6. 대학의 시설물을 파괴하는 학생
7. 기타 학칙 및 제규정을 위반한 학생

제10조(징계의결의 요구) 제9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때에는 2주 이내에 교학처장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학생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7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01.01., 2012.05.01., 2015.02.13>

1. 사건경위서 1부. [상별규정 서식 제4호]
2. 징계대상 학생의 진술서(본인의 거부 시 생략할 수 있음) 1부. [상별규정 서식 제5호]
3. 지도교수 또는 학과장 의견서 1부. [상별규정 서식 제3호]

제11조(징계의 종류) ①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으로 구분하며 근신은 2주 이내, 유기정학은 3주 이내, 무기정학은 3주 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0.01.0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 경우, 근신 2주는 사회봉사 20시간 반성문 2회, 유기정학 3주는 사회봉사 30시간 반성문 2회, 무기정학 3주 이상은 사회봉사 50시간 반성문 2회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0.06.01., 개정 2015.02.13>

③ 평가고사 중 부정행위자는 해당과목을 0점 처리하며 징계절차 없이 총장의 허가를 받아 근신 2주 이상을 부여한다. 단, 대리시험 등 부정행위가 심한 경우는 학생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신설 2015.02.13>

제12조(근신처분의 기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근신에 처할 수 있다.

1. 교직원에 대한 예의를 지키지 아니한 자

2. 수업태도가 불량한 자
3. 문화 윤리 규범에 어긋나고 품행이 불량한 자
4. ~~삭제~~ <2015.02.13>
5.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행동을 한 자

제13조(유기정학 처분의 기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유기정학에 처할 수 있다.

1. 협박 또는 폭행을 가한 자 <개정 2010.01.01>
2.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교내질서를 문란케 한 자
3. 학생신분을 망각한 행위를 한 자
4. ~~삭제~~ <2015.02.13>
5. 학교의 명예를 손상케 한 자
6. 두 번 이상 근신처벌을 받은 자
7.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행동을 한 자

제14조(무기정학 처분의 기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정학에 처할 수 있다.

1. 집단폭행에 가담한 자 <개정 2007.01.01.>
2. 교직원에 대한 언행이 심히 불손한 자
3. 고의로 학교 질서를 문란케 한 자
4. 고사 중 대리시험 등 극심한 부정행위 자
5. 허가 없이 집회를 주동한 자
6. 금품 및 물품을 갈취한 자
7. 학교 비품 및 시설을 고의로 파괴한 자
8.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개정 2007.01.01.>
9.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행동을 한 자

제15조(제적 처분의 기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에 처할 수 있다.

1. 흉기를 사용하여 심한 부상을 가한 자
2. 학교 명예를 크게 손상시킨 자
3. 실형선고를 받고 복역 중인 자
4. 재학 중 2회 이상 정학처분을 받은 자
5. 학생신분을 망각하고 극히 불미한 행동을 한 자
6. 근신 또는 유기정학, 무기정학의 징계기간 중 다시 학칙을 위반하여 개전의 정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 <신설 2010.01.01>
7.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행동을 한 자

제16조(징계심의 절차) ① 징계대상자는 위원회에 출두하여 자신의 의견을 변론해야 한다.
<개정 2010.01.01.>

- ② 위원회가 징계대상 학생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되, 직접 송부하는 것이 주소불명 기타 사유로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선으로 갈음할 수 있다. 진술을 하기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 심사만으로 징계의 결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01.01.>
- ③ 위원회는 징계를 심의 의결함에 있어 학생의 평소品行, 학업성적, 공적, 개전의 정, 기타 정상을 참작할 수 있다. <개정 2010.01.01.>
- ④ 교학처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 징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01.01., 2015.02.13>

제17조(특별지도 및 권리정지) ① 제적 이외의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징계기간 중 지도교수 및 소속 학과장의 계속적인 특별지도를 받아야 한다.

② 근신 처분을 받은 학생은 수업 이외의 모든 학생 활동의 참여가 금지된다.

③ 유기 또는 무기정학을 받은 학생은 처벌을 받은 날로부터 해제되는 날까지 학생으로서의 모든 권리가 정지되며 수업을 받을 수 없다.

제18조(징계의 해제) ① 근신과 유기정학은 기간이 만료되면 특별한 절차 없이 해제된다. 다만, 총장은 징계기간 중 품행을 참작하여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무기정학의 해제는 지도교수 또는 소속 학과장이 학생에 대한 지도결과확인서가 제출될 경우 교학처장은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받은 다음 총장의 승인을 얻어 징계를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03.01., 2015.02.13>

제19조(통보) ① 징계는 비공개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교학처장은 징계사실을 지도교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02.13>

② 교학처장은 징계사실을 학부모와 본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02.13>

③ 징계를 받은 학생에 대하여는 징계의 종류 및 사유를 학적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0조(징계의 감면) 총장은 징계대상자 또는 징계 중에 있는 학생이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징계를 감면할 수 있다.

제21조(보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가 심의하고 총장이 승인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1판-제정/시행 2005.01.01.>

이 규정은 2005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판-개정/시행 2007.01.0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정의 개정)

1. 제4조제6호" 기타 지도교수의 포상 추천을 받은 자"를 신설하다.
2. 제9조(징계의 대상) 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집단 또는 개인적인 행위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학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학생
3. 제10조(징계의 요구)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목격한 관계 교직원이 사건경위서류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학생처장에게 징계를 요청하여야 하며 학생처장은 48시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를 발의할 수 있다."를 "48시간 이내에"를 삭제한다.
4. 제14조(무기정확 처분의 기준) 1, 8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집단폭행에 가담한 자
 8.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자
5. 제16조(징계심의 절차) ③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③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해당 학생이 소명을 요구할 경우 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인다.

부 칙 <3판-개정/시행 2010.01.0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정의 개정)

1. 제4조제1호 "2년간"을 "기간중"으로 개정하다.
2. 제5조(포상의 발의)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다.

제4조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학과장은 다음의 서류를 학생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학생처장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학생위원회에 포상을 발의할 수 있다."로 개정하다.
3. 제5조제3호 "지도교수 또는 학과장 의견서 1부. [상별규정 서식 제3호]"를 삭제한다.
4. 제6조제1항 "학생처장은 포상대상 학생이 추천되면 구비서류를 갖추어 학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이를 상정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를 삭제하다.
5. 제10조 "제9조의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목격한 관계 교직원이 사건 경위서류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학생처장에게 징계를 요청하여야 하며 학생처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를 발의할 수 있다."를 "제9조의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학생처장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학생위원회에 징계를 발의할 수

있다.”로 개정하다.

6. 제11조 “징계는 근신은 2주 이내, 유기정학은 3주 이내, 무기정학은 3주 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를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으로 구분하며 근신은 2주 이내, 유기정학은 4주 이내, 무기정학은 4주 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로 개정하다.
7. 제13조제1호 “폭행을 가한 자”를 “협박 또는 폭행을 가한 자”로 개정하다.
8. 제15조제6호 “근신 또는 유기정학, 무기정학의 징계기간 중 다시 학칙을 위반하여 개전의 정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를 신설하다.
9. 제16조제1항 “위원장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지도교수 또는 관계 교직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를 “징계대상자, 지도교수 및 교직원은 위원회에 출두하여 자신의 의견을 변론해야 한다.”로 개정하다.
10. 제16조제2항 “위원장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해당 학생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를 “위원회가 징계대상 학생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되, 직접 송부하는 것이 주소불명 기타 사유로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선으로 갈음할 수 있다. 진술을 하기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로 개정하다.
11. 제16조제3항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해당 학생이 소명을 요구할 경우 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인다.”를 “위원회는 징계를 심의 의결함에 있어 학생의 평소品行, 학업성적, 공적, 개전의 정, 기타 정상을 참작할 수 있다.”로 개정하다.
12. 제16조제4항 “학생처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 징계승인을 받아야 한다.”를 신설하다.
13. <상벌규정 서식 제8호> 출석통지서/ 진술권포기서 신설하다.

출석통지서

인사 적항	학 과		학 년		성 별	
	학 번		성 명			
	주 소					
출 석 이 유						
출 석 일 시		년 월 일 시 분				
출 석 장 소						
유 의 사 항		1.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 2.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며, 서면진술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처리함.				
본교 학생 상벌에 관한 규정 제16조 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학생처장 : (인) 귀하 -----(절취선)----- 진술권포기서						
인사 적항	학 과		학 년		성 별	
	학 번		성 명			
	주 소					
본인은 귀 학생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학생처장 귀하						

부 칙 <4판-개정/시행 2010.06.0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정의 개정)

1. 제11조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 경우, 사회봉사 또는 반성문 제출을 명할 수 있다.”를 신설하다.

부 칙 <5판-개정/시행 2012.05.0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05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정의 개정)

1. 제10조 “제9조의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학생처장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학생위원회에 징계를 발의할 수 있다.”를 “제9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때에는 2주 이내에 학생처장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학생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7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로 개정하다.

부 칙 <6판-개정/시행 2014.03.0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정의 개정)

1. 제3조 “포상의 종류는 학업상”을 “성적우수상”으로 개정하다.
2. 제4조제1호 “학업상 : 당해 졸업생중 본교 재학 기간중 학업성적이 최고 득점인 자”를 “성적우수상 : 당해 신입생으로 입학성적이 우수한 자 및 졸업성적이 우수한 자”로 개정하다.
3. 제5조(포상의 발의) ① 공적조서 1부.[상별규정 서식 제1호] 삭제하다.
[상별규정 서식 제1호]

공 적 조 서

제 목					
인 사 적 향	학 과		학 년		성 별
	학 번		성 명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세히 기술하여 주십시오>					
본교 학생 상벌에 관한 규정 제5조 1호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적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소속 직위 성명 (인) 웅지세무대학교 교학처장 귀하					

4. 제18조제2항 "지도결과보고"를 "지도결과확인서가"로 개정한다.

부 칙 <7판-개정/시행 2015.02.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0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정의 개정)

1. 제5조, 제6조, 제10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제1항제2항 "학생처장"을 "교학처장"으로 개정하다
2. 제7조제1항 "교무처"를 "교학처"로 개정하다
3. 제7조제2항 "학생처"를 "교학처 학생팀"으로 개정한다
4. 제11조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 경우, 사회봉사 또는 반성문 제출을 명할 수 있다"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 경우, 근신 2주는 사회봉사 20시간 반성문 2회, 유기정학 3주는 사회봉사 30시간 반성문 2회, 무기정학 3주 이상은 사회봉사 50시간 반성문 2회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로 개정하다
5. 제11조제3항 "평가고사 중 부정행위자는 해당과목을 0점 처리하며 징계절차 없이 총장의 허가를 받아 근신 2주 이상을 부여한다. 단, 대리시험 등 부정행위가 심한 경우는 학생위원회에서 심의한다"를 신설하다
6. 제12조제4호 "고사 중 경미한 부정행위 자"를 삭제하다
7. 제13조제4호 "고사 중 부정행위 자(사전준비 등)"을 삭제하다

추천서

제 목					
인 적 사 항	학 과		학 년		성 별
	학 번		성 명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세히 기술하여 주십시오>					
본교 학생 상벌에 관한 규정 제5조 2호에 의하여 위와 같이 추천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소속 직위 성명 (인) 웅지세무대학교 교학처장 귀하					

의견서

제 목						
인 적 사 항	학 과		학 년		성 별	
	학 번		성 명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세히 기술하여 주십시오>						
본교 학생 상벌에 관한 규정 제5조 3호 및 제10조 3호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지도교수 또는 학과장 : (인)						
웅지세무대학교 교학처장 귀하						

사 건 경 위 서

제 목					
인 적 사 항	학 과		학 년		성 별
	학 번		성 명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세히 기술하여 주십시오>					
본교 학생 상벌에 관한 규정 제10조 1호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건경위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소속 직위 성명 (인) 웅지세무대학교 교학처장 귀하					

학 생 진 술 서

제 목					
인 적 사 항	학 과		학 년		성 별
	학 번		성 명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세히 기술하여 주십시오>					
본교 학생 상벌에 관한 규정 제10조 2호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진술서를 제출합니다. 만일 상기기재내용과 다른 점이 발견될 시에는 귀 대학의 어떠한 조치에도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웅지세무대학교 교학처장 귀하					

[서식 제6호]

징계(포상) 의결서

결 재	학 생 위 원 회		
	간 사	위원장	총 장

문서번호	징계(포상)- -		주무부서	교 학 처	
대 상 자	성 명	학 과	학 번		
징계(포상)사유					
내 용	()				
	의 결 주 문				
	이 유				
지시사항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WAT. 20 -	웅지세무대학교총장				

지도결과확인서

제 목						
인 적 사 항	학 과		학 년		성 별	
	학 번		성 명			
징계내역	징계종류		사 유			
	주문내역		기 간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세히 기술하여 주십시오>						
본교 학생 상벌에 관한 규정 제18조 1항, 2항에 의하여 징계해제를 위한 지도결과확인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지도교수 또는 학과장 : (인)						
웅지세무대학교 교학처장 귀하						

[서식 제8호] <개정 2010.01.01.>

출석통지서

인 적 사 항	학 과		학 년		성 별	
	학 번		성 명			
	주 소					
출 석 이 유						
출 석 일 시		년 월 일 시 분				
출 석 장 소						
유 의 사 항		1.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할 것. 2.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며, 서면진술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처리함.				
본교 학생 상벌에 관한 규정 제16조 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교학처장 : (인)						
귀하 -----(절 취 선)-----						
진술권포기서						
인 적 사 항	학 과		학 년		성 별	
	학 번		성 명			
	주 소					
본인은 귀 학생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웅지세무대학교 교학처장 귀하						